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93. 7. 8.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6. 21. 마포  
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93. 6. 28.

다. 상정일자: 제17회임사회 제2차위원회('93.  
7.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산업과장 이영  
목)

가. 제안이유

정부의 제조업중심의 경제활성화정책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육성지원

나. 주요골자

- 목적: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 기금운영위원회구성: 위원장인 부구청장  
을 포함한 9인이내
- 위원회의 심의사항: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액 결정
- 운영보고: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포구의회(정기회)에 보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가. 동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의 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  
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나 경제상  
원조를 주는 것을 주내용으로하는 조성  
법규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  
한 동 조례(안)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  
나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며,

나. 동 조례(안)은 요점인 기금의 용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모든 대상업체  
들의 참여한 요망사항이므로,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관리가 요구되는 바,  
공정한 심의를 위한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홍길표위원): 안 제6조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위원을 부구청장, 각과장 등 당연직을

줄이고 사회에 있는 경제전문인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이영목 산업과장): 예산에 관한 사항이  
므로 예산회계법상 행정직이 책임을 져야하  
고 외부인이 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문  
역할밖에 안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질의(홍길표위원): 예산회계법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태만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 4명과 다른 인사 5명  
으로 구성하면 안되는가?

답변(이영목 산업과장): 외부인사 2명 정도  
는 자문역할밖에 못한다. 홍보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나 참고하여  
규칙에서 요청하겠다.

질의(정연우위원): 중소기업육성설치기금조성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시킨 법적 근거는 있는  
가?

답변(강신일 시민국장): 법적 근거는 없다.  
원칙은 조례제정이 된 상태에서 기금조성되  
어야 한다.

질의(정연우위원): 의결기관인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여 의결을 요  
청한 법적 근거는 있는가?

답변(강신일시민국장): 조례제정과 동시에 예  
산에 계상했다. 추경도 처음 올리는 것이고  
조례안도 처음이다.

질의(정연우위원): 순서도 맞지 않은 것을  
의결 요청하는가?

답변(강신일 시민국장): 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 추경과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

질의(정연우위원): 조례는 정하지 않고 기금  
을 먼저 조성하는가?

답변(강신일 시민국장): 지방자치법의 근거로  
한다.

질의(정연우위원): 집행부서의 편의에 의해서  
일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나 수혜  
자를 위하여 일 처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답변(강신일 시민국장): 앞으로 충실히 법에  
의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겠다.

질의(황태식위원): 오래 전에 조례제정이 되  
어야 하는데 늦은 것이 아닌가?

답변(강신일 시민국장): 본청 준칙안이 내려  
온 지는 얼마 안되었다.

질의(황태식위원):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답변(강신일 시민국장):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반반씩 운영하기로 하겠다.

5. 토론요지: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3. 7. 8. 홍길표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집행부서공무원이 대부분이어서 일방적인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수를 줄이고 경제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용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함.

다. 수정 주요 골자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함.(안 제6조 제2항)

7.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93. 7. 8.

제안자: 시민보건위원장

1. 수정이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집행부서공무원이 대부분이어서 일방적인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수를 줄이고 경제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용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함.

2. 수정주요골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함(안 제6조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산업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마포구의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경기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자대상자의 선정
2. 용자액의 결정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과 상공계장이 서기는 산업과 소속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용자의 절차, 용자한도액, 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등)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의 사용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213
----------	-----

제출일자 : 1993. 6. 2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정부의 제조업중심의 경제활성화정책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육성지원
2. 주요골자  
목적 :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기금운용위원회구성 :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9인이내  
위원회의 심의사항 : 용자대상자 선정, 용자액결정, 기타사항  
운영보고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 의회에 보고
3. 제정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상공 55471-839(93. 5. 26)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시달]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6. 예산조치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마포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자대상자의 선정
2. 용자액의 결정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과장, 산업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과 상공계장이 서기는 산업과 소속직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 용자의 질차·용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용자금의 사용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용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보고서

'93. 7.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6. 29.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93. 7. 2.

다. 상정일자: 제17회임사회 제2차위원회('93. 7.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김영찬)

가. 제안이유

우리구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대상 물품현황

컴퓨터4대(13,783천원)와 소형승용차 2대(9,200천원)등 총 2개품목 22,983천원을 신규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승인 요청한 물품은 컴퓨터와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소형승용차로 승인시 행정의 사무자동화와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동물품에대한 본회의 승인을 전제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취득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향후에는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예산에 계상하여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유남렬위원): 지역교통과 소유차량 현황은?

답변요지(김진환 지역교통과장): 차량단속용으로 승용차 1대와 베스트 1대가 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의안번호	215
------	-----

제출년월일: 1993년6월29일  
제출자: 마포구청장

1. 제출이유: 우리구 행정업무수행상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취득대상물품현황(총괄)

(단위: 천원)

구분	품목	수량	금액	비고
계		2	6	22,983
신규취득		2	6	22,983

3. 관계법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